민법일반 6

- - 한정치산자 : 제9조, 10조
- 가족법상의 행위는 할 수 있음
- - 한정치산자의 취소: 제11조
- - 금치산자 : 심신상실

- -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: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제한이 없으나, 예외적으로 □ 공동대리, □ 子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, □ 이해상반행위
- - 단독친권관련 개정 : 이혼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,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

- 부재와 실종
- 부재자: 부재자의 재산관리
- 실종: 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
-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

- 부재자 자신의 재산은 부재자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
- -그러나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관여함

- -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
- □ 본인의 부재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, □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(23조)

- -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
- 제22조 1항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.
- 제114조 1항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

- - 재산관리인의 권한
- 제118조(대리권의 범위)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의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. 1. 보존행위 2.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
- -> 처분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함

-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했거나 허가를 얻었어도 본인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처분한 경우에는 무권대리 -> 무효
- 제130조 (무권대리)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

- 제126조 (권한을 넘는 표현대리)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책임이 있다.
- 민법 제22조 2항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,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.

-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, 가령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위 결정후에 확실하여졌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며 위 결정 이후에 이르러 취소된 경우에도 **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**서만 생기는 것이며 그간의 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그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.
- (출처 : 대법원 1970.1.27. 선고 69다719 판결【소유권이전등기】 [집18(1)민,021])